

第215回国會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錄 第3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0月17日(火)

場 所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 가. 해양수산부
 - 나. 해양경찰청
-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가. 해양수산부

審査된案件

-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1
 - 가. 해양수산부
 - 나. 해양경찰청
-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
 - 가. 해양수산부

(10시03분 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중국
산 납땀계 수입문제 등으로 해양수산부 관계관 여
러분과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와 어업인 소득향상, 그리고 21세기 국가해양전략
인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을 위해 불철주
야 수고하시는 盧武鉉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우리가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예
산집행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년도
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
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
항 등에 대하여는 정책의 입안단계와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 가. 해양수산부
 - 나. 해양경찰청
-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가. 해양수산부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
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
산,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부소관 19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
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
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
사올립니다.

지난 8월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盧武鉉
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
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
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지원을 부
탁드립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威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해양수산행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1999회계연도 해양수산부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는 지난 98년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는 일부 예산에 있어서는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대응한 어업구조조정과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 시급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이·전용과 건설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1,744억원이었으나, 이중 171억원이 미수납되고 6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어 수납액은 당초 예정액의 98.5%인 1조 1,567억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9년도 예산액 3조 335억원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3조 2,192억원이었습니다. 이중 92.6%인 2조 9,825억원을 지출하고 1,62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3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59억 3,700만원이었으며 이중 52억 900만원이 수납되고 7억 2,8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액 1조 2,837억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2억 1,900만원과 재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171억 8,900만원이 증가되고 이체액 197억 1,1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현액은 1조 2,914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조 2,359억 9,500만원이 지출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였던 어항공사비 등 288억 2,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6억 5,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회계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 1,648억 6,200만원의 98.5%인 1조 1,479억 1,700만원이었으며 163억 7,100만원이 미수납되고 5억 7,4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조 242억 9,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80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현액은 1조 1,223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는 이중 9,997억 2,700만원을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사업 등에 지출하고, 969억 7,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6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35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억 8,200만원을 수납하였고 1,3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5,417억 8,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27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145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5,718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수산물 산지 종합처리시설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349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7억 9,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없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836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2억원을 합한 1,90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1,749억 9,4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 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신어장개발지원신청자 미달 등으로 142억 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연도 예비비는 171억 8,900만원이 배정되어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171억 7,300만원이 지출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 7,800만원이 수납되고 2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934억 7,800만원중 2,896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은 2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8,000만원이 수납되고 2억

8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6억 2,500만원 중 12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부 전직원은 21세기 우리 조국의 번영과 발전은 바다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 아래 선진화된 행정체계를 갖추어 고품격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미래 해양에 대한 안목과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양부국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부를 지켜봐 주시고 기탄 없는 질책과 비판을 통해 그릇되고 부족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정책적 고견을 엄숙히 받아들여 위원님들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洪承湧 차관입니다.

金成洙 차관보입니다.

金鍾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李章旭 국립수산진흥원장입니다.

李東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입니다.

李龍雨 해양정책국장입니다.

程伊基 해운물류국장입니다.

金英南 항만국장입니다.

安國全 수산정책국장입니다.

朴宰永 어업자원국장입니다.

金性奎 감사관입니다.

徐廷皓 안전관리관입니다.

金炯男 국제협력관입니다.

金昌男 국립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해양경찰청의 청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金宗佑 해양경찰청장입니다.

李旻祐 차장입니다.

李尙奎 경무국장입니다.

林世鎬 경비구난국장입니다.

崔廣賢 정보수사국장입니다.

安兌煥 오염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해양수산부문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張仁植 전문위원 張仁植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요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해양수산부 소관의 회계별 결산검토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해양수산 부문의 주요시책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주요시책 방향은 약 2조 4,6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 등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일어업협정 체결 등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대처하여 어업구조조정사업 및 기르는 어업육성 등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입국을 선도할 해양과학기술 개발 등 해양과학투자의 증대 둘째, 생산성 있고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서 오염해역을 준설하는 등 연안통합관리체계 확립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셋째, 증가하는 해상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부산, 인천 등 권역별 주요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부산, 광양 등에 집중투자하는 신항만 건설추진, 넷째, 고비용 물류구조의 개선, 여섯째, IMF 사태에 따른 경영난과 신·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확대를 위해 약 2,000억원의 국제규제 어업인지원 대책비를 편성하여 감척사업, 실업선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해상안전 등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21세기 해양부국을 향한 기본구상인 ‘해양한국21’을 수립하였고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양환경보존과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어장관리법 및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환경에 대

한 투자규모가 미흡하고 특히 신항만건설 부문
 경우에는 IMF 사태에 따른 여파로 민자사업이 계
 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
 습니다. 해운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
 기 위한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정확한 어
 획통계 자료구축 미비 등으로 인하여 업종별로 불
 균형된 조업쿼터를 확보했고 일본수역 내 조업실
 적 부진 등의 결과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금후의 국제어업협상 과정에서는 차
 질 없는 대처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근해 자원관리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세계 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어업환
 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연안오염
 방지대책, 체계적인 기르는 어업의 육성대책, 자원
 관리 및 사료관리대책 등이 미흡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생산성 높은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산부문의
 개혁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결산집행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을 말씀
 드리면 신한·일어업협정 등 국제적인 상황변동에
 따라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비와 이차차이를 보
 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규
 모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예산배정의 지연과 지원대
 상자 선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다
 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일부 선박·어구의 감정
 가격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어장축소에 따른 어업자원 관리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출어어선의 어획
 실적 보고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미수납 관련사항
 입니다.

99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과태료 미수
 납액은 3,500만원으로 98년의 1,800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수산물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라
 값싼 수입수산물이 국내수산물로 위장판매가 됨으
 로써 수산물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어업인
 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에는 조업구역이 서해바다의

경우 서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국
 내산과 구별을 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6페이지 중간에는 단속실적의 통계자료를 제시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의 형태는 미표시와 허위·위장
 표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로
 는 그 처벌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과태료 부과
 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허위표시위반의 경우는
 단속건수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산물의 수입단계의 검역에
 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
 겠습니다라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
 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신고체제가 중요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명예감시원제도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원실업지원금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한·일어업협정체결 등 국제규제에 따른 선원
 실업대책을 위해서 99년 4월에 제1회 추경예산안
 에 선원실업지원금 4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
 업발전특별법이 99년 8월에 저희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되었고 당시의 통상임금을 2
 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4개월분을 추가지급하도
 록 내용을 변경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특
 회계에 책정되었던 실직지원금 21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실직선원 3,297명에게 총 189억 7,000만원
 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5억 3,000만원은 폐업지
 원으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실직지원금으로 전
 환된 200억원은 다음 연도로 127억 7,300만원이 이
 월되었고 나머지 72억은 대상자 감소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대상 선원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
 어든 내용을 보면 이 특별법에 의한 실업지원금
 지급기준에 의거해 지원함에 따라서 실제 지급가
 능한 어선원수가 3,297명으로 감소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상실에 따른 조업구역축소로 실직어
 선원들이 일시에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과 IMF영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을 고려해 볼 때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의 하나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책 등을 다양하게 강구하

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99년도 영어자금 이차보전예산 594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이 중 83%에 해당하는 493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100억 9,500만원을 타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24억 9,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전용 및 불용처리된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의금리와 실제집행 시점에서의 금리차이에 기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어업인 연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연체자는 영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IMF라는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진 어업인들의 경영애로를 감안해 볼 때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심한 자금난을 겪는 어업인들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자금여력이 아직도 미흡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계속 확대실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부사업 취소로 불용된 이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수산물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건의를 올렸습시다라는 그 건립이 취소되거나 해서 14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반납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물과학관 건립지역 및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라 10억원이, 강원도는 지방비 분담액 미확보로 8억 4,8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지나 지방비 분담금 미확보 등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업선원 대체고용지원사업비 일부 불용이 내용은 우리 나라 실직선원들을 고용하는 선사의 경우에 5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추경내

용이었습니다라는 그 선사들이 외국인고용을 선호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총허용어획량제도는 UN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라는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국립수산물검사소 예산은 인건비, 기준 경비 등을 합쳐서 67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이 중 65억 9,100만원이 집행되어서 수산물검사 사업 예산은 11억원 규모입니다.

수산물검사소는 현재 경기도 일산에 본소를 두고 산하에 11개 지소를 두고 행정직 26명, 검사원 125명, 기능직 31명 등 총 1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균 및 중금속 등 분석장비는 103종 7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물생산량과 국내소비량의 차이는 약 100만t에 달하고 있어서 부족량은 결국 수산물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으며 수산물수입량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15쪽 상단입니다.

수입증대에 따른 검역·검사의 양 및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최근 들어 중국 등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꽃게, 복어 등에서 검출된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잇달아 발견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의 강화가 중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제도의 수산물 수입검사체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산물수입에 대한 검사는 식품위생법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서 이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검사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소속 수산물검사소에서 활어패류를 비롯한 신선 냉장·냉동·염장 등과 같은 단순 가공품을 검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서는 통조림 등 수산물가공품을 검사하고 유통단계에 있는 모든 수산물의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가공·제조 또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등 현행수산물 검사업무체계가 사실상 3원화 되어 있습니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산물검사소, 지방자치단체 이와 같은 검사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16쪽 상단에 참고표로 제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99년의 수입수산물은 총검사실적의 0.8%인 1,957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중국산 수산물은 부적합비율이 1.1% 높은 편이며 부적합량은 1,286t으로 전체 부적합량의 65.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산 수산물의 위생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쁜 편입니다.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인력 및 장비의 보강, 둘째, 수입국 현지에서의 검역시행, 셋째, 수출국가공업체의 국내 등록제도, 넷째, 유해식품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강화입니다.

따라서 특히 유해수산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상향조정하고 허가취소 등 제재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과 관련된 약덕상인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명부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향후유관업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개진하였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다섯째, 수산물검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법령정비입니다.

여섯째,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항 갑문위탁사업 계획변경 및 항만공사제의 도입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99년 2월 정부의 조직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작성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에서 2001년부터 부산·인천항에 대해서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부산항과 인천항은 2000년도에 재정자립도가 각각 113%, 126%로 예상되어 독립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만공사를 설립 운영토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타예산에서 전용확보한 후 99년9월 20일 행정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서 이 용역은 금년 6월30일 완료되었습니다.

다.

이 용역 연구결과에 의하면 항만공사설립안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산하 항만공사를 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만공사 설립전제조건으로 동 공사의 재정자립을 위한 부족재원에 대한 정부지원과 항만의 상업적 운영에 따른 물류비 상승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항만공사제도의 도입일정을 보면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항만공사법 등 관련법규의 재·개정이 이루어지면 2001년 하반기에 항만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부산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항만공사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하단입니다마는 항만공사 설립취지가 원만히 달성되도록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의 설립주체, 재정적 자립성 여부, 기능 및 관할 범위 등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하고 적절한 항만공사 설립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3쪽 부산신항 호안축조공사 민자사업자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검정글씨로 유인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의 민자유치사업이 전반적으로 IMF사태에 따른 기업자금난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항만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호안공사를 민자사업자에게 위탁시행하도록 결정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당초 정부주도의 공사계획을 민자사업자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하여 추진계획을 변경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감독과 공정한 자금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 물동량의 99.8%가 항만을 통하여 유통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비 절감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특히 동북아 물류요충인 우리 나라에서 부산·광양항을 국제물류의 중심항만으로 계속 개발하고 이와 같은 중심항만을 통하여 국제환적화물을 유치하면 육지배후수송문제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항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SOC투자 중 항만에 대한 투자비율이 81년도에는 13.5%, 2000년도에는 6.8%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요항만의 체선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항은 16.7% 광양항 8.1%, 울산항 7.0%, 부산항은 1.3%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99년도에 3,34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항만시설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의 마련과 함께 외자유치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7페이지 항만공사 중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자꾸 설계를 변경하는 등 최초설계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 등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 사업에 전용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 등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 사업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체결로 인하여 어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99년 8월 국회가 의원발의로 제정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어선 감척사업과 실업지원금, 어구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한 248억 5,200만원을 합하여 1,978억 9,600만원의 재원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감척대상 어선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가 지연되어 261억 400만원이 이월되었고 1,71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의한 어선감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조한 지 오래되지 않은 어선들이 대량감척, 99년 부산지역의 경우에 감척대상어선 총 188척 중 선령이 15년 이하가 48%인 91척이 감척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감척한 이들

폐선에 대해서는 그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척된 폐선들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노후화되어 어선의 잔존가치가 하락되거나 감척어선의 관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정부재정지출이 늘어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폐선활용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감척대상어선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결과 지연입니다.

99년도에 감척대상선박에 대한 선체감정평가는 각 시·도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감척사업비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재차 확인작업이 전국 9개 시·도 693척의 어선에 대해서 실시되었으며 확인작업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또한 불확실한 감정평가에 기인된 낭비적 예산집행추진이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어업인들에게 지원되었던 99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확정하고 해양수산부 일부 사업비를 전용하여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감척대상어선에 대한 어업손실액 평가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어획량, 판매단가, 어업경비 등 산정과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평가사업 시행자인 시·도들도 통일된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산정액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1쪽 수산물 종합판매장 사업부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르는 어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기르는 어업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나라 양식가능어장은 17만 5,904ha로 이 중 99년 현재 개발된 어장은 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된 어장 중 일부 어장은 연

안오염과 어장노후화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양식어장 개발과 첨단 양식기자재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장의 자원조성을 위해서 수산종묘의 방류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역별 어장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치어방류 등 환경친화적인 내수면어업 시설 확충에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재정용자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영어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어자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어업인들에게 어업경영비를 저리로 공급하여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수산물의 생산증대와 어가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을 말씀드리면 99년 이후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의 제한에 따른 어업여건이 나빠진 점을 감안할 때 영어자금 지원비율을 최소한 50%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은 43% 수준이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현재 영어자금이 연 8%에서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5.5%로 낮추어졌습니다. 이는 원양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원생산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한·일어업협정 등 인접국가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신어장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정을 감안할 때 현행 해외자원 생산자금의 이자율 8%를 영어자금이자율 5.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영어자금과 통합운영하여 원양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소형어업인들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을 마치고 해양경찰청 소관 4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경찰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200해리 광역경비체제 구축, 해양오염 방지와 방제기능 강화,

해상안전 및 구조체계 확립, 이와 같은 내용이 해양경찰청의 99년도 역점 시책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계 151개국들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각 연안국이 151개국입니다. 그중에 123개국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99년에 발효되어 해상경비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해상경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1쪽을 말씀드리면 서해상에서의 중국어선들에 대한 불법조업과 선박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밀수입 검거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에 10건, 98년에 14건, 99년 19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39건, 98년 39건, 99년 80건, 금년 7월 기준 39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선박을 통한 각종 밀수·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99년도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사업 중 경비구난함 건조사업과 遠海 감시용 헬기 도입 등 광역경비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해경에는 12해리 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大洋用 방제정은 300t급이 5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충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항행 여객선과 300t급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방송수신기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해난사고의 65% 이상은 80t급 이하의 소형선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들 소형선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상교통문자방송도 적극 활용하여 해난사고 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끝으로 47쪽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농림부와 산림청에도 있었습니다. 99년도에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 예산은 예비비 171억 8,900만원과 전용액 140억 7,700만원을 합한 312억 6,600만원을 배정받아 31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재해대책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시 재

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경비로서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도 매년 태풍, 호우 그리고 적조나 이상조류에 기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배정 받아 재해대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 사천만에서 발생한 어업재해의 경우에 98년 7월에 발생하였는데 재해복구 경비는 99년에 전용된 예산으로 지출되는 등 이러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재해대책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업피해의 경우에 국가의 지원대상 범위는 수산양식물, 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획된 수산생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망어업에 있어서 그 시설물인 어망·어구의 피해는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동 어업에서 어획된 수산생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획된 생산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급은 항상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구가 끝난 다음에 지원되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어가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복구비의 일정비율을 사전에 지급하고 복구완료한 후 정산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대부분의 수산생물 재해는 수중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나 피해액 산정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피해발생 이전의 수산생물량과 피해발생 당시의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적인 산정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지형학상 위치로 매년 태풍, 호우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특단의 중장기대책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면 피항선박에 대한 관리, 어항·항만·방파제시설과 양식장시설 등에 대해서 사전에 재해를 대비하여 설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현재 어류 가두리 양식시설은 목재와 스티로폼 부자로 제작한 뗏목형 틀이기 때문에 태풍 등으로 쉽게 파손되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수산진흥원이 3년간의 연구로 96년에 개발한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설은 연구비 3억 4,400만원을 지원 받아 선진 외국의 현지시설과 실태조사를 거쳐 개발했습니다마는 이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설은 기존 양식시설의 문제점을 크게 보완한 고강도의 내파성 가두리시설로서 금년에 발생한 두 번의 태풍에도 견디어낸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비용이 기존 양식시설보다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 융자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결산 및 예비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權五乙委員 질의 전에 짧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들을 다루겠지만 곧 있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륜 있으신 盧武鉉 장관께서 해양수산부를 맡게 되어서 상당히 기대가 큼니다. 아울러 盧武鉉 장관께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상당히 오랜시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큼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의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좀 갖다 드리지요.

장관님, 혹시 저희 한나라당에서 국정감사 자료협조미비 시정의 건, 이 공문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받았습니다.

○**權五乙委員**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간단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해양수산부장관 이·취임사도 누락, 편철 부실로 해서 냈고요. 수산도매법인 결산내역도 복사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하고요.

또 제출거부된 것이 연안해운과 경인선 철도 복원에 따른 물류변동 검토, 한·중어업협정과 관련된 외교통상부와 수신발송한 문서 등 15건, 납수산물과 관련 중국 현지실태 조사 내역, 그 다음에 구체이유 없이 미제출된 내용도 PA용역비 지급 기준 및 내역, 중·일어업협정 관련 EEZ 위치도 등 관련 자료, 해운관계 물량 등 15건입니다.

국정감사 때는 당연히 내주어야 될 자료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중이라도 바로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또 내용을 충실하게 다 못해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불편과 지장을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출되지 않은 요청자료의 구체적인 내역은 12일에, 최근에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하나하나를 아직까지 다 파악하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하나를 일일이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의 부분은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통계를 다시 재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번잡해서 아직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정감사 시간까지 최대한 맞추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한·중어업협정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입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호간의 입어척수와 어획량에 관한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 또는 유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직원들이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 상당히 부담

을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따로 구두로 보고드리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해서 국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준해서 착실하게 자료를 찾고 또 내용을 분석해서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부득이한 것은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장관님, 제가 답변을 듣고 자료가 바로 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 한·일어업협정 때도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가 교섭 중인 관계로 대외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외비가 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당 소속 위원들이 이미 양자강 금지수역을 인정했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 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과 합의의사록까지 맞교환한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한 그 서류는 이미 대외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대외비다…….

실질적으로 교섭의 주체가 해양수산부인지 외교통상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외비가 될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 나라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몰라야 될 대외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독도도 포기하고 동해도 팔고 저쪽 양자강 연안도 포기해 버리고 저쪽 동중국해도 포기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비밀협상, 밀실협상이 이 나라 국익을 해치는 결과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에서 먼저 알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거부하는 해양수산부의 어떤 자세랄까 외교통상부의 자세는 이 나라 국익을 지키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하루 전이나 당일 제출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는 그런 어떤 기술이랄까 그런 어떤 전술을 좀 피하고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거나 적당하게 넘어가기 위한 목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대외비로 우리 부에서 직원이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장관이 보아서 대외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장관이 보아서도 이것은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은 간사님께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哲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다 질의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10분으로 시간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鄭哲基委員 鄭哲基**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부국 건설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연일 수고하시는 **盧武鉉** 장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서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에 항만개발 및 컨테이너부두지원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89.1%로 8.6%가 이월되고 2.3%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총액이 무려 970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집행기관이 사명감이 없거나 의지가 약한 것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북아 각국이 항만건설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저마다 허브항 건설을 목표로 항만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련해 준 예산마저 다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양강국을 건설하고 허브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장관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충분히 파악이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중요한 SOC시설에 투자계상된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광양항 개발 예산현액 330억 4,400만원 중에 267억원이 지출되었고 62억 1,200만원이 이월되고 1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무려 예산의 18.8%가 이월된 셈인데 유독 광양항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월된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광양항 개발 예산 중에 23억원이 재해복구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시급한 항만건설

을 위해서 책정된 목적계정을 재해대책비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시급하게 항만을 건설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이 판국에 목적계정된 예산마저 전용을 하는 그런 사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산 신항만 건설 호안공사비 10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시행토록 했습니다. 정부주도의 공사를 민자사업자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특혜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재정융자특별회계 중에 양산ICD 조성에 50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투입된 예산의 사용내역과 민간법인체인 주식회사 양산ICD에 정부 재정이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OC 투자 중 항만부분 투자액 비율이 81년도 13.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서 2000년도에는 6.8%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로 인한 주요 항만의 체선·체화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3,300억 이상이나 생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항만 SOC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증가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해마다 투자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시급한 항만건설의 어려움 실상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나라를 21세기 동북아의 중추국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을 국가운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추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중심항만건설이 이렇게 지연되고야 어떻게 대통령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7월1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1년 동안의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건의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국정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方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委員 우선 盧武鉉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를 합니다.

국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장관을 뽑기 때문에 하나 장관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장관님은 나라 사랑의 마음이 각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신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국민적인 분노와 문제를 일으켰던 독도해역 문제입니다. 엄연히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해역이 중간수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전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더구나 울릉도는 정관수역을 35해리로 확보를 하면서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라고 하면서 영해 12해리밖에 확보를 못하고 울릉도 해역과 독도해역의 중간에 0.4해리의 중간수역을 설정함으로 해서 소위 울릉도가 부속도서인 독도와 분리되는 기현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어업협정은 영토주권과 직접 큰 영향이 없다는 등등의 이야기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분명히 독도는 외교상 일본에게 굴욕적인 어업협정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팔아먹었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그 협정을 주도했던 金善吉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총주라고 하면 사실상 내륙입니다. 사실 거기 분들은 바다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독도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잊고 있던 분들인데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독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선거운동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독도에 대해 그만큼 국민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주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2002년 1월이 되면 신한·일어업협정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재협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독도 부근 해역에 대한 우리 영유권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차제에 오늘 장관으로서 독도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한·일어업협상에 임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과연 독도가 진실로 우리 영토로서 장관의 모든 직을 걸고 독도의 영토권을 조금도 훼손 없이 그리고 인근 영역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의 국익에 손실이 안 되는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 아연한 것은 독도가 분명히 우리 영토이고 우리 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해군함정이 그 경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토에 이 나라 병력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해경 경비정이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해양경비정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해군함정은 거기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영토를 이 나라 해군이 방어하고 경비를 못하고 일본 눈치를 보는 주권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은 앞으로 독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鄭哲基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항만투자가 1970년에 보면 그래도 SOC 대비해서 27%, 그리고 75년에는 십칠팔%, 이렇게 갔습니다. 그후로 90년대 초에 가면 이것이 7.3%가 되고 금년에 와서 6.9%,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항만시설이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체선·체화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면 세계 여러 해운물량 중에서 아시아권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그 반 중에서도 특히 동북아시아가 그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해역이고 그 가운데 부산항이나 인천항은 중심항구입니다.

사실상 지금 물동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99년도에는 88% 정도 항만시설 확보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2011년에 가면 44.5%밖에 확보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중심항으로서 또 세계의 중심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항만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장관의 확고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확보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조건을 보면 민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왜냐하면 항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대단히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만이용료라는 것은 어

떻게 보면 공공요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개념으로 민간자본이 투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태가 전체 계획에 대해서 약 0.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자확보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면 민자유치를 보면 대부분이 상업성이 강한 그런 컨테이너부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주시설은 정부에서 하고 상업적인 시설은 민간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장관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최근에 와서 PA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PA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에 따라서 요청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 부산이라든지 인천의 이런 지방자치체가 지방 재정자립도의 상황을 봐 가지고 항만자치체가 실시될 경우에 그 항만수익을 가지고 일반재정에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부산과 인천을 항만자치체도로 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해수부에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도 보면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어떤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장관께서 부산만은 특별히 P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PA는 많은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주도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다소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륙도 방파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오륙도 방파제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륙도 방파제가 태풍 때 붕괴가 된다면 지 했을 경우에는 부산내항을 완전히 휩쓸어버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국가적인 제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못하겠고 나중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제보를 받았고 그리고 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많은 문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 관계기관에서 과소평가 하거나 아니면 은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위험성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에게 묻겠습니다.

가예호라고 현세해운대표 최근에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제보는 가예호라는 현세해운대표가 외화유출 및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구속되었는데 최근에 모당의 대단한 실체가 지시를 해서 구속 중에 부당하게도 최근에 석방이 되었다. 그리고 같이 구속되었던 김봉선이라는 사람은 아주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같이 구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

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부산해경청에서 수사한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容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容琬委員** 朴容琬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해양부국을 위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盧武鉉 장관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權五乙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출서류의 대외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납꽃계 때문에 상당히 나라 전체가 들쭉 들쭉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냄비근성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먹으면 아주 사망하는 정도로 떠들다가 이제는 또 유아무야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납꽃계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이런 것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을 좀 받고자 하니깐 이것도 대외비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관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95년부터 99년까지 농어촌특별세 2,086억원을 지원해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35개의 제2종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종 어항은 시·도지사가 소규모 어항 중 어항세력을 고려해서 지정 또는 해제하고 있으므로 이 어항세력이 큰 항이 우선적으로 신규개발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94년에 제정한 제2종 어항시설사업집행요령 제5조에서 94년 7월 10일 이전에 지정된 제2종 어항만을 농어촌특별세 지원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어항세력이 약한 어항이 94년 7월 이전에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농어촌특별세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상황도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선수가 10척에 총 톤수가 23t에 지나지 않는 통영시의 장작지항은 어항세력이 약한데도 94년 7월 이전에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상남도 등 4개 시·도에서 94년 7월 이후 어항세력을 고려해 2종 어항으로 규정했다는 이유로 해서 16개 어항 중 경남의 냉천이라든가 연명 강동항, 충청도의 간월도, 경기도의 전곡 제보항, 울산시의 신항 등 12개항은 99년말 현재 이용하는 어선수가 50여척 이상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항인데도 농어촌특별세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장관께서는 시·도지사가 신규개발대상 제2종 어항을 선정할 때 94년 7월 이후 지정된 어항을 포함해서 어항세력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제2종 어항시설사업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수산물산지종합처리시설사업,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업, 수산물물류센터사업, 수산물종합판매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대사업의 총액 552억 6,200만원의 56.3%인 310억 9,8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3.7%인 241억 6,400만원은 전용, 이용, 불용 처리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17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산물산지종합처리시설사업입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20여개 산지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99년에는 운영자금 75억원을 포함해서 180억원을 당초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고성수협 17억 2,000만원 또 전남 고흥수협 16억원, 전남여수수협 11억 1,350만원, 제주 한림수협 12억원 합계 56억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용, 이월됐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올해 8월에 와서야 전남 여수수협과 제주 한림수협은 BIS비율과 대손충당금 등을 이유로 산지종합처리시설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당초 20여개소의 산지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해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의 효율성 증대계획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 180억원의 31.3%인 56억 3,350만원만 집행되었다가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된 금액 23억 1,400만원을 다시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은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7조 3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예산이 정한 장·관·항간에 상호전용을 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전용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기타방위의 장에서 집행해야 할 해상교통 문자방송, 수신기설치 등 3건의 공사비를 사법및경찰의 장 예산집행잔액 1억 3,134만원을 전용해 임의로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비구난활동항목 예산으로 해야 할 조난신호 자동발신기를 시설비 항목의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을 전용해서 구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다.

이렇게 예산을 무단전용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임의로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200해리 광역경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중기장비확충계획에 대형함정 15척과 항공기 5대의 구입을 포함하는 등 장비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9년 12월 함정과의 화상전송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해상사고 현장사진을 보도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영상전송장비를 65억 1,120여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 방송계통에 있었습니다마는 영상전송장비가 어떤 것인지 또 65억이나 드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의 구입과 관련하여 애초에 예산에 배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더욱 문제되는 것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조정승인도 없이 49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임의 전용해 구입했다는 점, 이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지 않고 다른 비목의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해서 구매했음에도 이 장비의 기능은 단순한 홍보목적에 지나지 않아서 구매의 긴급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전송장비구매의 필요성과 무게획성은 1999년 12월 구입계약을 맺은 장비가 2000년 10월 현재까지 시스템점검을 핑계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의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이래 10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전무했다는 것은 결국 지난 1년 동안 65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대답을 바랍니다.

물론 망망대해에서 일어나는 해양해난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없겠지요. 육지 같으면 금방 기자들이 몰려오고 사진기자들이 가지만 망망대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를 신속히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전송장비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1년여 동안, 10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전무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한 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해양경찰청에 대한 질의는 국정감사 때

좀 많이 질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龍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龍學委員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입니다.

우선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입수산물의 무차별유입으로 어민들은 지금 농촌경제의 과탄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고 있는데 원산지 허위위장표시나 미표시 등의 방법으로서 점차 그 방법이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허위표시위반의 경우 단속실적 건수는 국민들이 보기에 도 극히 미미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적발하여 부과한 과태료도 45%가량 징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수입단계에서부터 위판장, 수산시장 등 도매단계와 최종소비단계에 이르는 유통단계에서 각 단계별 단속을 체계화하고 단속기법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분명한 집행 등 해수부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수부의 방침과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건비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전용액 183억원 중 인건비 전용액 43억 5,200만원과 이용액 20억 3,300만원은 해수부 전체 전·이용액의 31%에 이릅니다.

부처구조조정과 가계안정비 등 특별인센티브로 인하여 전용하였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어항건설사업비 등 주요사업비에서 전용하였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인건비지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전용행위 또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용하더라도 사업비가 아닌 예비비 등 기타채원에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사용은 추후 국회에 보고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그런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확보한 이차보전사업비 742억 4,800만원 중 105억 7,700만원이 타용도로 전용되고 영어자금에서 24억 9,800만원, 경영안정특별자금에서 59억 3,200만원 도합 85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IMF사태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자금을 연체시킬 수밖에 없었고 국가조차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IMF로부터 자금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연체발생자에게 이차보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워 어렵게 확보한 예산 중 35%정도를 전용 또는 불용처리함으로써 제일 어렵고 힘든 서민층인 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정부의 융통성 없는 예산집행 사실을 국민이 안다면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라는 특수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고 방침을 새로 정하여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옳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결국 불용처리되어 국고를 낭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에 대한 원망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99년도 부산신항 공사의 시설비예산 446억원 중 준설토투기장사업비 100억원이 전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되고 또 민자유치사업이 IMF사태에 따라 기업이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민자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주도 공사를 중도에 민자사업자에 위탁한 것이 문제가 있고 진정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민자유치사업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설비 총액 446억 모두 위탁하여야 마땅함에도 일부 사업만 위탁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업무추진능력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예산절감과

민자유치사업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였다면 사업 전체를 위탁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사업자 선정관련 특혜성 시비, 사후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 우려, 위탁시행시 WTO협정과 마찰도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文錫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文錫鎬委員 새천년민주당 文錫鎬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盧武鉉 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결산승인 신청서류를 죽 보면서 우선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 해양수산부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자료에는 99년 예산집행실적이 예산현액 361억 900만원 중에 지출액 359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월액은 1억 2,400만원, 불용액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의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은 359억 5,900만원이고 그중에서 8,000만원이 전용되어서 예산현액이 358억 7,900만원이고 그중 358억 2,900만원이 지출되어서 5,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사업비예산은 361억 900만원이고 그중 359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2,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3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예산액이 얼마인지도 각 자료가 차이가 있고 특히 불용액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결국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세 개의 자료가 전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검토한 것 중에서 일부가 이런데 전체적으로 결산보고서 자체가 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다, 별 것 아니다, 사무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회라는 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정부가, 해양수산부가 결산승인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국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해수부는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공어초 사업에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지난 71년도에 시범실시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총 1조 1,000억의 천문학적 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 중심의 어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의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예산대비 96.6%가 집행이 됐지만 양적인 면에서 보면 계획량 1만 350ha 중에서 8,651ha밖에 시행이 되지 않아서 83.6%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인공어초의 예산단가와 실제 집행단가가 차이기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와 같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진척되는 정도로 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인공어초 관련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방안 그리고 정부가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4,785억원을 투입을 해서 어선세력의 26%인 11만 5,100t, 3,035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총 162억 7,200만원으로 6,430t, 92척을 감척하는데 그쳐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까지 계획된 어선수의 23%만이 감척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금년

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까마는 무려 2,329척을 추가로 감척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감척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대책 및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咸錫宰위원장, 張誠源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실업선원 대체고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44억원이 책정되어서 700명을 대체고용시킬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만은 대체고용실적은 382명에게만 지원되어서 20억 3,3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선원의 대체고용은 1인당 월 5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서 외국인선원을 국내 선원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과 우리 선원과의 임금격차는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60만원에서 80만원, 외항선원의 경우에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장려금 지급가지고는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이 우리 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부진했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액수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실직선원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산불용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장려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을 해 주든지 그것이 현실상 어려운 면이 있다면 차라리 실직선원에 대한 전업교육 또는 취업알선 등 사업과 또 지금 해안에 가보면 해안쓰레기가 상당히 널려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수거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그 예산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추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誠源 文錫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나라당 孫泰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仁委員 孫泰仁 위원입니다.

해양한국을 위해서 그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에 취임하신 盧武鉉 장관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盧武鉉 장관님의 취임으로 해서 정부 내에서도 해수부가 상당한 위상을 제고시키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승인의 건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항만 자치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항만자치공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용역결과는 그야말로 기대 이하의 용역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관께서 취임하셔서 가지고 백지화시키신 데 대해서는 정말 옳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만자치공사에 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원 취지 그대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또 항만이 그야말로 물류중심지 또 항만이라는 것이 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업성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부산과 인천의 항만 자치공사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해수부의 의견을 쫓아가다 보면 부두공사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항만자치공사에 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공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 또 물류의 거점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지금 3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이고, 부산과 인천에서의 용역비까지 합치면 한 5, 6억이 되는 돈이 나가면서 자치공사에 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셔서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셨고 앞으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이 항만자치공사는 그야말로 해운업계나 또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 재해복구비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체 전용만 하더라도 134억 4,700만원이고 그 내역변경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해복구비로 전용을 하다보면 원 목적사업이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뻔한 이치인데요. 재해복구비로 전용하는 데 있어서, 어제 농림부 결산 때도 말씀

이 나왔습니다마는 농림부나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10년이나 5년 동안에 재해복구비로 들어간 평균치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誠源 孫泰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의 姜賢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賢旭委員 姜賢旭 위원입니다.

盧武鉉 장관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해수부가 발족을 하면서 저희가 참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건교부에 항만업무가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SOC예산 중에서 항만부문 예산의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 상황을 놓고 여러분이 걱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큰집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독립을 하고 나니까 자꾸 밀려서 IMF 이후에 정부의 예산규모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늘지 못하는 예산 가운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SOC 부문에서 항만부문의 배려를 거의 무시하고 자꾸 줄여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해수부의 독립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盧武鉉 장관께서 상당히 분발하셔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항만부문의 예산이 늘지 못하고 줄어드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99년 결산을 보면 항만공사비 중에 있는 예산도 집행할 못해서 한 234억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못만 것도 문제인데 있는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된 데 무슨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에 필요없이 계상되었거나 아니면 사전준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추진했는데 민간쪽의 협조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되었거나 이런 이유가 예상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항만은 수익성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산, 목포, 인천, 포항, 평택, 울산 이런 항만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장수익률이 충분치 않으면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수지 안 맞는 장사를 할 기업이 없지요.

그래서 정부예산지원부분을 늘려야 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들어오는 민자에 대해서 적정수익성을 보장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는데 장관께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12% 수준의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관계부처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역시 결산에 관한 문제인데 어족 자원 보존과 어민의 안정소득 확보를 위한 어선감축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연차계획으로 어선감축을 추진해왔는데 99년 감척사업비로 계상된 207억 중에서 44억이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지원사업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전용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감척을 현재대로 추진하면 지금 현재의 재원 가지고 2004년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10년동안 추진을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절박하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꼭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9년도에 207억원을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또 44억원을 잘라가지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추가사유나 예측하지 못했던 소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를 추경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취지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일어업협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했고 예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지원예산사업도 예측되었다고 보는데 44억이라는 돈을 예측할 수 있었고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구나 예산이 부족해서 쪼쪼 매고 있는 감척사업비 44억을 잘라가지고 돌린 데 대해서 저는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4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수부가 기획예산처에 예비비를 요구한 일이 있는가, 기획예산처하고 합의해서 44억원을 돌렸는가? 앞으로 한·중어업협정이 구체적으로 타결되었을 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감척사업비를 또 전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誠源 姜賢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朴煥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煥太委員 해마다 결산을 할 때마다 결산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한심한 생각이 늘 듭니다. 이것은 해수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인데 지금 결산이, 99년말에 대한 집행이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근 1년 전에 다 끝난 것을 이제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말 저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결산제도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할 것 벌써 1년 전에 다 전용하고 이월하고 불용액 다 반납해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 결산이다, 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산서류를 뒤적이고 있으려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워낙 개혁적인 盧武鉉 장관님이 오셨으니까 해수부부터 관례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 다음에 2년 가까이 지나서 결산할 때 한번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점검하는 절차나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국회는 예산 한번 통과시켜주면 그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고 다음에 2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결산서 하나 보는 것,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정부가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독려도 하는 국민적인 위임을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보고를 관례화하는 것이 어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기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집행하는 연도의 중간쯤, 상반기에 한번 결산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애로가 있으면 우리한테 솔직하게 의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머

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국익을 위해서 또 국민복을 위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관례를 세운다면 다른 부처나 다른 위원회도 모두 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곧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국정감사 때도 개략적인 예산집행 상황, 금년도 중요한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상반기가 끝나면 위원회에다가 예산집행 현황을 일종의 결산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 꼭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장관께서도 예산 전체를 중간에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검토하는 기회도 있고, 이런 제도를 관례화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장 개혁성이 강한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수부는 ‘우리의 미래를 바다에 걸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말만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해양수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인력양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인력, 수산인력이 전혀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3D 업종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아무도 지원하지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런 인력을 양성시키는 학교라든지 전문기관도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인력이 해마다 최근 10년간 6.7%씩 감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다에 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급선원이 주이겠습니까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인력을 전부 다른 나라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철수해버리면 우리 배는 모두 스톱되고 우리 인력으로는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文錫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선원 대신 실업선원들을 고용하면 월 5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되지도 않고 44억 중 23억 몇 십만원만 집행이 되고 한 20억이 유보가 됐어요. 모처럼 정부에서 배려한 선원에 대한 정책이 절반밖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정부에서 세우고 거기에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산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이 없어요. 수산 해양인력들의 양성 기초기관인 학교에 전혀 가지를 앓는데 어디에서 수산인력이 나오니까? 그냥 노동하다가 잘 안 되니까 바다에 나가본다는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질 높은 해양수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물론 해수부의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지 교육부 소관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인력에 대해서 겨우 병역특혜 하나 가지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우도 개선하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정말 사나이답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가정도 위할 수 있는 부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전에는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수산고등학교는 곧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장관께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誠源 朴燾太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許泰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泰烈委員 盧 장관님 취임을 정말 축하합니다. 저하고 각별한 인연도 계신 분이요 다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던 문제를 같이 다루게 되어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힘을 모아서 해양수산업무가 盧 장관님 오시고 나서 크게 신장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99년도 결산과 예비비는 아직도 깊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張誠源간사, 咸錫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오늘 각 위원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해수부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결산과 예비비와 관련해 가지

고 거기에 국한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해수부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추진준비가 사전에 미흡하고 또 추진력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수부가 차지하는 국가 전체예산은 안타깝게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 그 어렵게 확보한 예산액 중에 99년도에 무려 2,367억이나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용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단히 고민을 하고 예산당국에서 온갖 일을 다해 가지고 겨우 확보한 예산인데 이 2,367억이라는 예산이 이월, 불용되었다는 것은 참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해수부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응 이해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마는 작년엔 한·일어업협정이나 금년에 또 한·중어업협정, 해수부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국정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탄 예산을 불용하거나 이월시킨 것이 많으나, 내용을 보면 공기가 부족했다, 계획을 변경했다, 예산집행의 시기가 미도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죽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역시 예산을 편성하는 검토단계에서부터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장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았나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을 해수부가 이끌어 가는데 대단히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해 어선의 해외 신어장개발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신어업협정에 따라 국내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하니까 해외에 가서 시장을 개척을 해 오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99년도 예산액에 총 2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4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안된다 싶어서 2000년도 예산에는 10억이 책정되었는데 한푼도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2001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전면 백지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당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워낙 높으니까 일종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국내어

장을 해외에서 찾자 이런 옛날 달가스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구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혀 준비도 안되고 검토도 안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어려운 예산을 짜 가지고 집행도 못 해보는 이런 것이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만시설확충 예산은 모든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는 수출말고는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내자원이 있으니까 무엇을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수출입화물의 99.8%를 이 해운업으로 물류를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거의 100%를 해운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항만시설이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면 수출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 나라의 기본적인 구조가 기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항만시설투자의 전체적인 개략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을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의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매년 예산당국하고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때 좀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적게 주면 또 그뿐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더라도 99년에 9,500억이 정부재정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000억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뭐 항만시설확충 운운하고 물류가 어떻게 동북아 미래거점물류센터로서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그것도 도대체..... 해수부만은 아니고 예산당국도 물론 똑같은 책임을 가지는데 대통령의 국정방향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盧 장관께서는 역량이 계신 분이니까 예산이 본격적으로 심의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뭔가 盧武鉉씨가 왔다, 뭔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적어도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민들의 부채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농어민 부채 이러면 농촌의 부채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어민이나 농민이나 똑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자금 이차보전비로 작년 예산에 59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83%만 소진이 되고 나머지 또 불용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난해에 농어가부채경감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농민이고 어민이고 빌려간 자금의 금리를 낮춰 주었는데 그 대상이 한 번이라도 연체된 사람은 해당이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농어가부채 때문에 진짜 곤혹을 겪는 사람들은 연체한 이 사람들이 더 급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해당이 없고 꼬박꼬박 돈 잘 내는 사람은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도 해 주어야지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제 농림부 결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어가 부채경감대책도 89%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어민도 80여%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것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하도 여론이 들끓으면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이다 발표해서 생색만 내지 실질적으로 딱한 사람은 혜택이 없는 이런 양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농림부와 해수부가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실질적인 농어가 부채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신항만건설에 따른 매립 또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감척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해수부 관련사업에 보상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평가를 해서 집행하는데 상당한 난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도 이 문제를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민들이 정직하기를 바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보상비를 책정하고 집행하는 우리 해수부가 보다 주도면밀한 보상정책과 집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가는 지금, 이 바닷가 이런 데 보상이 나가는데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보상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보다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음 국감도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해경에 한 가

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사고가 매년 약 20%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교통방송수신기를 꼭 탑재를 해야 되는 선박의 기준이 국제항행여객선하고 300t급 이상의 선박에만 수신기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난사고의 65% 이상이 사실은 300t미만의 선박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탑재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영세하니까 달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해경예산으로 영세어선에 대해서 탑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이 인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교통방송의 상호체계가 안 되어서 이런 해난사고가 자꾸 증가된다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正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正彦委員 연일 국정감사준비와 결산감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288억 2,800만원, 불용액은 266억 5,5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 어항건설공사 등 동절기의 공사중지와 공기부족으로 139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전체 이월액 중 48.4%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항건설공사의 장기적인 공사계획에 따라 원칙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 가운데 전체 불용액의 32%에 해당하는 어업인지원 이차보전 대상자금 소요감소분이 85억 1,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신지식인 어업인육성지원, 실업선원 대체고용지원, 선원실업지원금, 경영안정특별자금 등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각종 어업인 지원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으면서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에서는 이월액이 969억 7,800만원, 불용액이 256억 7,000만원, 전용액이 202억 7,000만원인데 주요 항만건설공사의 이월액 규모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전용액 202억 7,000만원 중에서 재해복구비의 경우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재해복구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월액 중 항만공사감리비 등에 상당한 전용을 하는가 하면 건설공사비에서는 공사중지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969억원이란 막대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이월액 중 항만시설건설 이월액 496억 5,0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동반 이월액 139억 8,000만원의 규모가 전체의 65.5%에 이르며 항만공사집행잔액 234억 7,800만원은 전체 불용액 256억 7,000만원의 92.4%에 달합니다.

따라서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부대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871억 2,200만원에 달해 해양수산부의 대규모 SOC 건설투자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에서 전용액은 260억 2,400만원, 이월액은 349억 3,500만원, 불용액은 77억 9,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신어장 개발 및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에 258억 8,400원이 전용되었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선 잔존가치 등 평가결과 도출기간이 길어서 261억 4,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문제는 잘못된 사업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총예산 40억 가운데 20억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20억은 사업자 선정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월되고 말았습니다.

어항건설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39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는 불용되는 등 과도한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불용액 142억 800만원 중 불용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경영안정특별자금은 신청자인 어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실적미달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 자금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항시설공사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총사업비 690억원 중 전용 22억 6,200만원, 이월 39억 6,500만원, 불용 8억 3,200만원 등 전체예산의 10.2%인 70억 6,600만원이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특회계에도 총사업비 846억원이 투입되어서 예산집중 효과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해경 일반회계 세출에서 전용액 68억 6,600만원, 이월액 18억 2,100만원, 불용액 19억 9,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용액 68억 6,600만원은 인건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로의 과도한 전용은 당년도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인건비의 재원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월액 18억 2,100만원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외자구매지연으로 14억 2,9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경에서 장비구입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치밀한 구매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경의 국특회계 이월액 4억 6,200만원은 강릉항 공기지 내 신축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장께서는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해양수산분야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錫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金洪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洪春 위원** 金洪春 위원입니다.

盧武鉉 장관께 질의 겸 건의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창립된 것은 우리 어민을 살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환경이 날로 오염이 되고 있고 남해안의 청정해역이 매일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추석 때 태풍의 경우에도 낙동강의 모든 쓰레기가 모여서 거제도 연안으로 전부 몰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치워주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치워주지 않고 영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반복되는 재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뭔가 바다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민들 자신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각 연안항·포구의 어민들이 폐어구, 그물, 쓰레기 따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다에 투기를 하고 나서 국가에다 대고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어민을 잘 계도하고 감시하는 노력을 해양경찰청과 더불어 해서 어민 자신이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도록 하는 계도 또는 단속의 조치가 보다 강화되지 아니하고는 이 바다가 정화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泳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泳鎭委員** 金泳鎭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부가 盧武鉉 장관님의 부임 후로 활기를 찾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지개를 펴면서 활동을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집행에 관한 제 개인적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총 2조 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금액으로는 743억이 되거든요.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의 내용을 한번 죽 봤는데 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면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촉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해수부가 세운 예산은 171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은 321억 6,600만원입니다. 전용이 140억 5,000만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것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올해 태풍이 두 번이나 있었고 또 피해가 우심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세운 재해대책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통상 그것으로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해수부가 스스로 책정한 예산 171억, 그 다음에 140억 정도를 예비비나 집행잔액에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해양수산부가 역할을 해야 할 주요한 사업부분에서 그것을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해야 될 사업의 축소, 그리고 정상적 예산집행에서 차질이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대책비는 이제는 예산확보에…….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도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하겠습니다만 이제 재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국지전적이고 예측불허하고 토네이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 제주도 태풍 같은 것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자동차가 뒤집히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먼 바다 혹은 가까운 해안 쪽에는

지원예산인 재해대책비를 이런 상황과 기후와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산책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됐다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그리고 차선으로 집행잔액에서 차용하는 것이 타당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盧武鉉 장관 부임하고 집행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이 관행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일 사항으로 될 때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규제어업인 지원관련 예산전용으로 수산정책에 차질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유통개선 관련사업비 205억 5,400만원이 전용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중에서 44억이 전용됐는데 이 문제는 전용을 어디로 했느냐? 한·일어업협정 관련 어선감축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한·일어업협정 관련해서 온 나라가 걱정이 가득했고 또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선감축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누구 한 사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한·일어업협정 어선감축비로 전용을 했는가?

보세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으로 혹은 수산물 종합판매장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 위판장 폐수시설, 급유급수시설, 수산물 도매시장, 종합판매시장, 원양어업 구조조정, 냉동저장시설, 해외 신어장개발, 이런 중요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들이 어선감축비로 전용을 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해수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을 해보면서 사실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위기나 여건이나 모든 것이 한·일어업협정 관련 어선감축비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예산부처가 무슨 다른 반론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것이 그렇게 절실했다면 우리 여야에 이런 문제를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이것을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전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봉사 제 닭 잡아먹기 식으로 이런 중요한 예산에서 전용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 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전용예산 집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상레저 면허시험 운영, 민간대행기관으로 이관하여야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榮委員 崔善榮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盧 장관님이 해양수산부를 맡고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히 해양수산부를 이끌 장관으로 믿고 있는 것은 盧 장관님이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盧 장관님에 대한 칭송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때면 전용과 불용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용이나 불용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많이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짓을 때 설계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10억이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 10억 짜리 건물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80%에도 되고 70%에도 되고 아주 염가에 할 수도 있어서 만부득이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정말로 내 살림같이 했을 때 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金泳鎮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쓸 때 어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쓸 수 있는 간척사업비 같은 것에다 전용을 했다면 그 공무원이 정당하게 집행했나를 잘 옥석을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그렇게 불용되거나 이월된 내용만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면 그 이해가 빠를 줄 믿습니다.

생략하고 지금 해양수산부의 제일 큰 사업 중에 ‘기르는 어업’, ‘인공어초사업’ 등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사업 중에서는 지금 다큐멘터리로 남태평양이나 각 바다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어초나 물고기의 생태를 방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를 보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이신 李方鎬 위원님은 정말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다큐멘터리 테이프 같은 것이라도 하나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

사람은 찍어서 맛을 보든지 눈으로 보아야 알지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인공어초 사업이 투자한 것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정말로 부적절하고 또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이번에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98년도의 미수납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미수납액으로 두는 것인지 98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축산물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이 과태료 부과를 구속력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부과를 하고 징수는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이유로 인력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인력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액은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인건비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인천의 연안부두 앞에 어시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한국산으로 죄다 꽂아놓았다가 누가 단속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단결이 잘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연락이 금방 되어 가지고 중국산이면 중국산, 필리핀산이면 필리핀산 그 꽂는 명패는 있습니다. 그것을 저기 사람이 오는데 슬며시 바꿔 놓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단속도 되지 않고 그저 재수 없는 사람, 동서남북에 문이 많으니까 문앞에 있는 사람 한두 명 단속이 되고 그 시장은 더 이상 들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첫 집이나 둘째 집 보고 나가야지 가보면 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시적 또는 우리 시책말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그나마 과태료를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이 더 많고 정말로 단속요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종치고 다니는 식으로 다녀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중국산하면 꽃게부터 시작해서 조금 값나가는 수산물에는 납덩어어리를 넣고 그랬다는데 이런 점도 보강을 더 해야 되고 이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위반하고 속이는 상인도 단속을 하는데 구속력이라든지 또 더 필요하다면 인력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근절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在旭委員 한나라당 경산 청도 지구당 위원장 朴在旭 위원입니다.

먼저 문제성 있는 예산이월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139억 4,000여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선원실업지원금이 예산배정지연으로 127억 7,300여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항구항만공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형화된 공정으로 예산편성시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 139억원이나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는 공사예산의 이월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실업지원금 127억 7,300여만원이 99년 10월 지출예정 되었는데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파악을 위한 용역조사가 늦어져서 2000년 3월에 6개월이나 지연되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인 선원들이 99년 이후로 감척사업에 의해 실직자의 처지가 된 후 거의 1년 이상이나 실업자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금년에 집행된 선원실업지원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원실업지원금의 산출근거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신해양법협약이 82년에 체결되어 우리나라는 94년부터 발효되었고 한·일어업협정이 수년을 거쳐 협상이 진행되어 99년1월 타결되었다면 신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해양질서의 대비는 적어도 10여년 전부터 준비되어야 했던 것이고 한·일어업협정의 영향에 대한 대비도 수년전부터 마련해 왔어야 하는 것인데 모든 해양정책이 하루아침에 닥친 일을 치르는 듯이 두서없고 무계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앞으로는 말로만 해양의 중장기비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차근차근 준비하여 예산에도 정확하게 반영하여 정직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감척대상어선의 보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척대상어선에 지원할 예산 1,978억 9,600만원 중 1,717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261억 4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감척대상선박의 감정평가가 지자체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

면 감정평가 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 경남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감척보상비리가 빈발하여 관련 공무원이 형사처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9개 시·도 693척의 어선에 대해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업에는 용역비 1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감정평가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척사업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자체나 수협 등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서류로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관리 감독내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사업비가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보다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와 역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공어초시설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361억 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8,651ha에 359억 2,200만원이 투입되어 인공어초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콘크리트어초이며 그중 80%가 사각어초로 천편일률적입니다. 해양과 어자원은 다양하고 각각 다른 특성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어초를 획일적으로 설치함은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1935년 처음 콘크리트어초를 설치한 후에 1952년부터는 재질과 모양도 다양하게 100여가지의 어초를 개발하여 오늘과 같은 풍부한 바다목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도 해양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어초를 시험적으로 개발 설치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일본을 비롯한 선진해양국가의 인공어초실태와 바다목장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는 기르는 어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의 예산과 방식으로는 요원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정도 늘리고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르는 어업육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경예산은 대부분 방위비 예산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소액이지만 세수추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2억 3,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액의 무려 187.8%나 되는 23억 1,3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세입예산액은 전혀 없었으나 8억 2,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98년도에도 예산액 대비 132.7%의 세입이 수납되었는데 이처럼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서 대충 편성한다면 이런 해경의 예산 편성관행을 어떻게 믿고 일반회계로 해경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 등 대내외 여건이 국방비의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해경의 예산도 일반예산으로 환원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볼 때 해경의 무성의한 예산편성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경시설 중 강릉항공기지대 이월액이 4억 6,200만원인데 이월사유가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공기는 정형화된 것이어서 예산편성시 충분히 일정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해경의 예산이 쓸 데가 없어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합니다.

해양오염방제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해양의 유류오염사고 증가 및 대형방치폐선, 해양폐기물투기 등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양관할권의 확대로 방제영역도 광역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3년동안 해경의 방제장비예산은 계속 감소되어 왔고 내년도 해양오염 방제대책비도 대폭 감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해경의 방제계획은 무엇입니까?

국제적인 방제협력이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기구, 국제협약 등에의 가입현황과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해경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04년까지 방

체능력 2만t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장비확충과 전문 인력양성도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誠源委員 민주당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발족한 지 몇 년 됐습니까라는 그동안에 해양수산부의 행정 이것이 처음에 발족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밀해졌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 군데 좀 미흡한 데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와 제가 지적하는 사항 사이에 상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행정의 인프라가 과연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에 가장 역시 해양수산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불확실한 통계였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통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일본측과 협상을 하다보니까 정밀하기 이를 데 없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일본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만큼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본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본자료, 기본행정의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후에 21세기 해양부국을 향한 해양한국 21세기를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칫 사상누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예산의 불용에 관해서인데 예산의 불용도 쓰지 않을 형편이 되면 역시 안 써야 됩니다. 나라의 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이것이 제가 어제 농림부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선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합니다. 수산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합니다. 수산행정의 바탕이 되는 수산과 해양의 조건이 변화합니다. 물론 여기 시시각각으로 변화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이랄지 2년이랄지 이런 기간으로 볼 때 변합니다. 그런 변화에 잘 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업인지원 이차보전예산 불용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이차보전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교하게, 정밀하게 예산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금리하락이랄지 또는 연체어업인들이 많았다든지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사업비를 총 742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74.3%에 해당하는 551억 5,6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5억 7,700만원은 타용도로 전용을 했어요.

해양수산부 여러분들, 이것을 어업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그야말로 IMF 이후에 자금난에 허덕이고 연체어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업인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흔히 하는 얘기대로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타용도로 전용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수산행정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성실하게 그야말로 멸사봉공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참 어려운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농민도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농민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업인들입니다.

농민들은 그래도 농사 지어서 지금 풍년이 들었다 해 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 지금 잡을 물고기가 없잖아요. 지금 생산량이라는 것이 몇 년 전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멸사봉공하신다 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서 제가 증언부언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항만건설과 관련된 예산, 이 인천항 건설은 장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액이 인천항 건설에 264억원 책정이 되었는데 예산현액이 312억원이 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5억원이나 된다 말이에요.

이월되고 전용되고 불용이 되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3분의 1의 예산이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盧 장관님이나 또는 차관이나 전부 다 작년도에 장관 안 하시고 차관 안 하신 분들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추궁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심하잖아요. 3분의 1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 올리지마는 나라의 재정을 정말로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검사, 검역과 관련해서 정말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꽃게, 복어에서 납덩어리 나오는 것…… 물론 여러분들 이해는 가요. 중국산 어부들이 그것을 넣었다, 여러분들 면책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꽃게, 복어에서 납덩어리 나온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셔야 하는 것이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막고 검역을 제대로 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그런 꽃게, 복어에서 납덩어리 나오는 것을 막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산물검사소에서 막겠습니까? 검사소에서 막지 못하고 누가 신고 하니까 그때서야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수산물검사소도 보니까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98년에 75만 3,000t이던 수입량이 99년에는 133만 2,000t으로 늘어났어요. 두 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75만 3,000t에 지나지 않으니깐 수산물검사소에서 그런 대로 182명의 직원들 가지고 그런 검역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132배나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인원을 가지고 철저한 검역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럴 땐 인원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지나놓고 나니까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과감하게 인원도 늘릴 것은 늘리고 해서 해양수산 행정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지금 중앙정부 산하 항만공사로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맞서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이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호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權五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權五乙委員 한나라당 權五乙 위원입니다.

좀 열악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국제환경이 변하는 상태에서 해양수산 업무에 장관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감척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업규제하고 다음에 해경의 경비정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우리 나라 어업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선을 상당히 많이 감척을 했습니다. 99년도 보니까 예산 1,978억 9,600만원 중에 1,717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61억 4,000만원이 현재 이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신한·일어업협정 이후의 감척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마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곧 체결될 한·중어업협정에 이어서 또다시 감척사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한·중어업협정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전에는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 감척대상, 감척선 수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없었고 그 뒤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척사업이 제대로 어민들을 보호하면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해야 될 것 같고 통일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국 시·도별로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속해 있는 경북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듣기로는 기준은 같은데 적용달리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많습니다. 바로 감척대상기금을 주는 데도 있고 조금 연체가 있다고 해서 늦게 주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중어업협상 뒤에 필히 있을 감척사업에 대한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차분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도별로 적용기준이 다름으로 해서 생기

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에서 통일된 기준, 통일된 평가 이것을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감척을 해서 폐선을 한 어선의 선령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기존에 있는 낡은 배를 감척시키고 그 배를 다시 인수해서 살려나가는 그런 것도 몇 번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감척대수야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가능하면 선령이 오래된 어선은 감척을 시키고 비교적 10년, 15년, 5년 오래 되지 않은 것은 살려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어업질서확립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어민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연안을 좀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정부나 우리 어민이나 국가가 상대적으로 정직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항상 비교했을 때 일본은 그래도 기르는 어업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은 어느정도 지킬 것은 지켰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99년도까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정부에서 양성화를 시켜주어서 어느정도 합법적으로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법 소형어업자가 많이 남아 있고 이분들이 별다른 생계가 없어서, 그리고 또 쉽게 전업하기도 어려워서, 단속 및 처벌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아울러 불법어로를 하고 치어까지 완전히 남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당어민들은 조금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정부가 입장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도 3중자망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기선저인망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았을 때 느끼는 것은 단순히 3중자망이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내수면에서는 한번 이렇게 단속에 걸리면 일이백 만원, 바다에서는 몇 천만원씩 몇 백 만원씩 벌금을 냅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3중자망이다 기선저인망이다 이렇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물코의 크기를 정해 주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치어를 남획하지는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에 있어 신축성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3중자망으로 단속을 당해가지고 벌금 내고, 그분들은 다시 또 어업에 종사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때문에 해당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전달을 했었는데 “현재의 법이나 시행령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단속을 할 때는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3중자망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그물을 보호하기 위해 옆에 쳐놓았는데, 이야기인즉슨 그래도 치어가 많이 걸려서 고기씨를 말린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봤을 때는 그물코를 규제하면 되겠구나, 그물코를 키우면 되겠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파악하고 계속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경의 경비정 건조사업은 실제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텐데 왜 국고채사업으로 항상 편성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해마다 지출해야 될 계속비사업의 성격에 맞다고 하면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元喆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元喆喜委員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어민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해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해양수산부 盧武鉉 장관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존경하는 다른 선배·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 나라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어장이 줄어들고 어민에 대한 피해가 생기는 바람에 이 피해대책문제를 거국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그 어민피해를 위해서 1,000억 정도를 피해대책비로 요구했는데 수협은 5,000억을 얘기했고 동료위원인 朱鎭亨 위원께서는 약 1조 정도의 피해를 주장해 가지고 논의하다가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특별히 예산을 1,000억 더 증가시켜가지고 2,000억 예산을 확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억 예산이, 물론 돈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섞여 있지만 적어도 이것은 특수한 사업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해서, 또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만들어가지고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장관이 했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한번 국회에다 소상하게 보고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척문제, 신어장 개발, 기르는 어업 등 각종의 용도로 쓴다고 해양수산부는 얘기를 하고 그 예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까 또 어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 그냥 내려준 예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아래에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문제는 보고를 한번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에 보면 감척지원을 위해서 상당량의 예산을 전용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아울러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후의 감척문제도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강망은 안강망의 종류별로 감척계획과 실제 추진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척결과 폐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폐선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 문

제도 아울러 해주시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초를 만들어가지고 해양의 보고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폐선도 좋은 어초시설이 된다는 얘기로 볼 적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종합판매장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57억 8,600만원을 타용도로 전용을 하고 또 수협의 경우에는 10억 4,600만원을 아예 불용함으로써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잘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盧武鉉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셔서 수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직거래문제라는 것이 물론 대통령께서 농어민을 위해서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제값을 받도록 하라는 그런 정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양수산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실무부서는 윗어른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해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직거래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지원을 한 수협의 직거래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흑자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유통단계를 축소시켜서 목적을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유통에는 단계뿐만이 아니라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통효율은 직거래사업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뺄셈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울러 감안해서 대책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여과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한 그러한 사업들이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앞으로 반성해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윗어른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잘 못하니까……. 이것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약분업문제처럼 이렇게 엄청난 문제로 파생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협문제를 지금 盧 장관님이 나서서 직

접 해결해 주시는 바람에, 말하자면 공적자금문제도 지금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서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적자금을 수협에다 지원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런 경영체는 혈세를 얻어서, 세금을 얻어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논리대로 지시를 해서 수협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부실된 여건 속에 있는 것만 협동조합에 전부 맡기고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전임장관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부산공동어시장이라든지 돈을 좀 벌 수 있는 시설은 이상하게 수협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것도 민영화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수협으로 넘어가서 수협 경영이 제대로 되고 어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만 되는데 이런 것 하나도 안 해 주고 덮어놓고 경영만 하라고 하니까 옛날 인플레이시대에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것이 신용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서 하니까 되는 줄 알고 하다가 결국 수협은 신용사업도 성공을 못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을 시정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내에 노동조합이 같이 공존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정부가 적절하게 지도해 주지 않으면 수협에서 어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은행원하고 마찬가지로 복지를 위해서 뛰다 보니까 어민한테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백날 공적자금 가지고 지원해 주어도 이것이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협의 경우는 이미 90년 초에 벌써 감자경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금융기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든 것이 다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1차 산업을 떠받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참고하시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서면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長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委員 鄭長善 위원입니다.

주한미군이 96년 이후에 군산항을 비롯해서 부산, 인천, 울산항 등 전국의 8개 항만을 통해서 공군용 유류저장탱크시설 부지 등 항만점유시설을 사용하면서 면제받은 점용료 면제액이 24억 정도 된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제받은 액수가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간의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 항만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닌지 또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평택항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느낀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항만의 중요성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까지 전국 항만시설 확보율을 96%까지 높이기 위해서 약 25조원이 소요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기서 투입하는 돈과 민자조달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GNP 대비 투자비도 매년 감소하여 81년도에 0.26%에서 96년에는 약 0.16%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0.29%, 대만의 0.28%에 비해서 저조한 수준이며 절대금액으로 봐서 일본의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만투자비를 재정규모와 SOC 투자비 규모로 대비해 보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년에 1.30%에서 2000년에 1.1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OC 투자비를 비교해서 보면 97년도 9.14%에서 2000년에는 7.64%로 떨어졌습니다. 그

리고 2000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4.2% 감소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것이 민자를 투자하기로 계획된 곳은 민자를 투자하고 정부가 투자할 곳은 정부가 투자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지 우리 나라 항만시설을 앞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민자는 얼마를 조달하고 정부는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姜賢旭 위원님도 교통세 배분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도로계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명확하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계정에 대해서만 유독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 정도만 상향조정해도 약 3,000억 정도 증가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만개발세나 항만개발특별회계, 그 다음에 항만개발기금을 마련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나라 항만발전에 대해서 항만개발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런 명확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대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항만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해수부 입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 같은 경우 원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여기 들어오시고 나서 중앙정부도 아니고 지방정부도 아닌 독자적인 항만공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수부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냐, 장단점이 뭐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이렇게 변화된 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

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다오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기능 강화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UN해양법에 의하면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서 우리의 해상경비구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는 광역경비체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하고 선박을 통한 밀수입이 증가하는 등 치안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99년에는 계획된 경협 헬기 1대가 도입되지 못했지요?

그리고 99년 세출예산에 요구한 방제정 3척 그건조비 66억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에도 1,000t급 2척과 방제정 150t, 1척의 건조비용도 반영이 지금 못 되고 있지요?

반영되었습니까?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내년도 예산에는 대형 함정 9척하고 헬기 2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鄭長善委員** 방제정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방제정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鄭長善委員** 1,000t급 2척도 안되어 있지요?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1,000t급 1척하고 3,000t급 1척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鄭長善委員**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나 하면 99년과 2000년 2년간의 예산 769억원은 총사업비의 약 15%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향후 3년간 3,678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의 73%를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수부하고도 관련된 것입니다. 마는 99년 세입수납액이 약 20억 7,800만원에 달해서 당초에 계상된 것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수납액 중에서 벌금과 변상금·위약금 수입이 약 18억으로 전체 수납액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이나 하면 해양오염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 폐유를 무단투기하는 단속실적을 보더라도 857건이 적발이 되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폐유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폐유반납을 면세유공급과 연계하는 등 폐유 수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거율이 아직도 56%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단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제작업과 관련해서 우리 해수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씨프린스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오염사건이 나면 사고 났을 당시에 방제작업만 정부가 하는 것으로서 임무가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외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전부 다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LG측에서 지역 환경단체 등과 함께 구성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3차 용역보고서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몇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엑슨 발테스호라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커서 약 8배에 달하는 4만 2,000t의 기름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환경청과 해양수산청에서 10년간 이것들이 어떻게 해양에 또 자연에 영향을 주는가를 지속적으로 정부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원인자에게만 그냥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조사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받아주고 만약에 불리한 것이 나오면 용역의뢰기관을 바꾸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추적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적인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

정부측 답변을 들으시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그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인 그리고 참고인채택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서 수입오렌지 판매담당인 LG유통대표이사 강말길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수입담당인 LG상사 대표이사 이수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이를 변경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李相培 위원님이 기르는 어업관련질의 등 5건, 朴燾太 위원님이 선원육성대책 등 3건, 朱鎭吁 위원님이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부진 등 8건, 金泳鎭 위원님이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전용예산 등 2건, 孫泰仁 위원님이 어선감척사업 투명성 확보방안 등 2건 그리고 위원장인 본 위원의 연안통합관리방안 등 3건에 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은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錫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먼저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회의의 신속하고 간결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물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남은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許泰烈 위원님, 朴在旭 위원님, 朴容琥 위원님 그리고 鄭哲基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朴燾太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

張正彦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질책과 함께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공사 및 사업기간의 부족, 민원발생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이월액 1,607억원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 691억원, 국제규제에 의한 어선감척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261억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151억원, 예산배정 지연으로 128억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이를 고려해서 집행가능액만큼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는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보상 후 공사가 착수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액 비율이 7.4%, 98년도에는 4.3%, 99년도에는 약 5% 정도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자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자협약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기상조건이라든지 그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얼마간 발생하는 이월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孫泰仁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張正彦 위원님께서 재해복구 예산문제를 지적하시고 재해대책비의 예산편성방안 및 기정예산의 목적 외 사용방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수산부 문 피해의 복구소요는 총 306억원이었습니다.

복구재원 마련은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 후 발생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과 영여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액에서 134억원을 전용충당하였고 기정예산의 불용재원부족분은 예비비를 172억원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희 부에서는 항만시설 유지보수, 어항건설 등 총액예산계상사업 내에 응급복구비를 별도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재해피해 복구로 인한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의 구조에 관해서 정부 전체에 있어서 재해복구비를 매년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고 그동안의 통계를 자료 삼아서 본예산에 사전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에 관해서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金龍學 위원님, 姜賢旭 위원님, 朴燾太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 張正彦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 朴在旭 위원님, 張誠源 위원님, 鄭長善 위원님께서 항만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개발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건설사업의 특성상 주로 해상에서 시행됨에 따라서 기상악화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와 토지, 어업권 보상 등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불용액은 공사계약과정에서 공사예정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용액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소요될 공사비를 전용하는 일은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반납될 예산에 관해서 재해복구비로 전용하는 경우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전에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보상을 사전에 완료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월 등이 최소화되고 이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항만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경쟁력의 증대에 따른 항만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나 항만개발 투자는 상대

적으로 도로, 철도 등 타분야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재정분야에서 항만투자비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내 항만계정배분율을 현 6.3% 수준에서 10% 정도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항만개발기금의 설치, 국공채 발행, 기타 항만사용료 현실화 등도 검토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서 수익성 부족으로 부진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사업성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를 채고시킬 수 있는 적정사업 규모로 조정하고 수익성이 떨어져서 과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민자사업계획은 과감히 재정투자대상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2011년도를 예정한 항만개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중에서 민자사업으로 할 사업과 정부투자로 할 사업을 대개 정해 놓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항만개발사업이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동안 IMF를 지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96년도의 항만개발종합계획이 지금은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전체 한건한건을 가지고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당국과 싸우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항만물동량과 그 수요량을 다시 예측해 내고 그 예측의 토대에서 전반적인 항만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민자유치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고 아울러서 민자유치촉진법에 관한 보장수익률에 관해서도 새로운 검토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할 것은 다시 분류하고 또 확실하게 정부투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다시 분류하고 민자유치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가능성에 관해 전망이 좀 불투명한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에 맞는 융통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단지 해양수산부만의 항만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항만개발계획으로 비중을 높여서 거기에 따라 항만개발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

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李方鎬 위원님, 孫泰仁 위원님께서 항만공사 도입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항만공사제 도입은 99년3월 정부의 구조개혁 과제로 한편으로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금년 4월경에 이르기까지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는 3단계를 거쳐서 항만공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구조개혁 과제로서 결정된 문제이고 또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고 있는 부산과 인천 지역에서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또한 일반시민의 강력한 여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항만공사를 원칙적으로 조기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신지역과 관련해서 특별히 부산에 대해서만 줄속하게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로서는 정부 전체의 구조조정계획을 한편으로는 거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들과 우리 부의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 본 결과 단계적 항만공사 이행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어찌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통한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두 번, 세 번에 걸친 전환과정이라는 것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고 생각해서 차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일단 항만공사제는 정부의 원래 방침대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계획하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사의 도입과정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항만공사를 설립할 것인가 중앙정부 산하에 항만공사를 설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에서 구조개혁 과제로 제기될 때의 의견은 중앙정부 산하의 항만공사를 예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나온 의견도 정부 산하의 항만공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항만공사심의위원회를 항만공사추진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추진위원회는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절반, 중앙정부 추천하는 사람 절반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인천의 경우에도 역시 인천에서 추천한 추진위원과 중앙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관계자 절반, 이렇게 해서……. 제가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5명, 5명씩 해서 1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공사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지금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鄭長善 위원님께서 장관은 중앙정부도 아니고 지방정부도 아니고 독립된 항만공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는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상이 그렇게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만공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조직이 항만을 관리하는 것보다 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근거는 항만이 대단히 수준 높은, 또 열성적인 항만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하고, 세 번째는 예산회계제도로부터 자유로운 원활한 항만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하는 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이 더 잘 살려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항만공사의 위상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항만공사 추진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항만공사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고 나아가서는 그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모아서 최종적으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위원회는 9월, 10월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기간을 10월 내지 11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안을 기초해서 법안통과가 내년 2월경까지는 마무리되고 내년 상반기에 항만공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方鎬 위원님께서 독도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委員 서면으로 하시지 마시고 장관님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아무래도 직접 답변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것은 정부 안의 소관부처로 따진다면 외교통상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EEZ의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도 역시 외교통상부 소관업무입니다. 따라서 독도가 EEZ의 기점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혀 말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소관은 외교통상부에서 의견을 밝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로서는 역시 어업협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업협정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 어업협정이라 할지라도 국민 정서상 EEZ선에 가장 부합하게 또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체면이 서고 국민들 정서에는 딱 맞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어업협정을 하지 않고 영원히 미룰 수는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업협정을 타결시키자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저런 선을 그어서 타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독도를 어업협정에 있어서 우리 한국 측 경제수역으로, 전속적인 어업수역 EEZ기점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입장은 분명히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또한 EEZ기점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수용하지 않는 한 영원히 무협정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와 같은 무협정의 상태가 계속됐을 때 그것은 우리 한국의 국익에도 이롭지 못하고 우리 어민들도 대단히 불안한 지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은 명확하지만 EEZ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어업협정을 체결한 사정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우리 측 EEZ의 기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EEZ의 경계선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우리의 영토고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답변 끝났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許泰烈委員 장관님 하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모두에 예산이월액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월은 계약도 되고 사업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99년도에 약 600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대상지도 정하고 다 했는데 이 불용이 된 것 이것이 사실 심각합니다. 이것은 600억이란 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체로베이스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하니까 이런 것을 다음에 예산당국하고 투쟁하더라도 이것은 잘 반영도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업무과약이 끝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수부를 지도해 가실 텐데 이 점을 잘 유념해서 가지고 이월은,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낸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데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李方鎬委員 장관 답변 중에서 두 가지를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PA문제인데 지금 장관답변은 그 PA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주 내용은 PA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PA 자체는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PA를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항만을 개발한다든지, 항만을 확장한다든지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수익을 일반재정으로 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A를 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항만운영이 효율적이겠지만 지금까지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등등 기타 여타 항구에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PA가 되었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그 항의 수입을 그것을 일반재정에 넣어 썼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보완장치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항만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기간산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의존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물류가 안 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의 이야기는 무엇이나 하면 PA의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PA가 되었을 경우에 오는 많은 문제점, 아까 말한 소위 예산확보 그리고 재투자문제 그것은 전혀 답변하지 않고 피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특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관이 지난번에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PA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의 뜻이 벌써 P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밑에 있는 관리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장관이 먼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중대한 사업을 끌고 나가면 그것은 상당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도문제입니다.

지금 독도문제가 말이지요. 물론 장관의 여러 가지 문맥의 흐름은 제가 충분히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대일관계에서 여러 가지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양국간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2002년1월에 만료가 되니까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훼손되어 있던 독도해역의 우리 조업권 문제입니다. 영유권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이 문제를 이제는 재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독도를 팔아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독도주변에 있는 해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 그리고 조업권의 확보문제를 명백히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일본과 협상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꾸 양보만 해가면서 그렇

게 해 가지고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협정을 했을 경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기로 갈 때 분쟁지역이 될 수 있고 앞으로 10년, 100년 갔을 때 영토분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울릉도 주변에서 35해리는 완전히 우리의 전관수역입니다. 그런데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12해리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왜 확보를 못합니까?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분명히 중간선이 되어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영토가 어떻게 해서…… 자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영토권이 훼손이 안되었다 하는데 그러한 잘못된 협정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음에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 35해리를, 아니면 더 넓게라도 최소한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업무를 강하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또 장관님이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지난 한·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독도문제를 다시 리마인드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업협정이 영토문제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장차 보아서 결과적으로 50년, 100년 뒤에 우리 영토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왜 일본이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독도를 영토로 주장합니까? 결국 50년을 주장하다 보니까 중간수역을 먹었다 이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사이의 조도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납니까?

그것이 안될 줄 알면서도 계속 주장함으로 해서 그것이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분쟁지역으로 되면 상호국 간에 조정애 들어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토권이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아까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하기로 한 오륙도 방과제 문제입니다.

오륙도 방과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부산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은 조금 생소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항의 모든 것을 바로 막아주는 대단히 큰 1,040m되는 방과제입니다.

이 방과제가 붕괴됐을 경우에는 이 항안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외곽에 있는 방과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제가 간단한 사람한테 제보받은 것이 아니고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방과제 서편 끝쪽 150m, 케이슨 36번입니다. 그 지역에 균열이 가서 대단한 굉음이 들리고 특히 최근 1년 동안에 더욱 심해지고 그리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케이슨이 애초 설계된 하중보다도 가벼워져서 좌우로 쉽게 흔들리는 상태인 것이다 등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근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 녹취를 해왔습니다.

그 부근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 그리고 해녀들 그리고 그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질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케이슨이 흔들린다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t도 넘는 그 거대한 케이슨이 흔들린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중간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린 증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자기 그 부근 마을에 산다는데 맥주깡통을 아침에 낚시 가 가지고 거기에 끼워 놓는대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가보면 그것이 흔들리니까 이리 저리 움직여서 깡통 자체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쭈그러진다 이것입니다. 그 깡통을 저에게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자료를 보면 해수부 답변이 이것이 시설물관리법상 기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대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시설이 기타시설로 분리되어 가지고서 전혀 점검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7월 26일 요청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해수부에서 갑자기 8월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측장치를 시설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측장치를 금년 연말까지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렇게 파도가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년 여름에

태풍이 올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측장치를 해놓아야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해놓아 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무튼 장관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추적을 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계속해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咸錫宰** 장관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PA문제에 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PA가 되면 그 수익이 지방재정에 혹시 충당되거나 하는 일로 해서 PA 고유의 목적달성에 훼손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공사가 어떤 형태로 가든 공사의 수익이 지방재정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PA가 지방정부 산하가 될 것인지 중앙정부 산하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보다 더 독립적인 자체 위상을 갖는 조직이 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시다마는 어느 경우라도 공사가 설립될 때는 공사에 관한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수익은 그 고유의 목적에 전부 재투자하는 것이 공사의 일반적 형태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만 특별하게 수익을 지방재정 또는 중앙재정에 충당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공사의 일반적 형태로 보더라도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소속되어서 수익금이 지방재정에 충당되고 그로 인해서 항만공사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도록 법을 만들 때 우리 부로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이 위원회에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독도에 관해서도 말씀 주셨습시다마는 독도를 팔아먹은 것이냐 이런 많은 비난을 듣고 있습시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독도의 문제는 5년, 10년, 20년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상당기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여당위원님들이든 야당위원님들이든 언젠가는 이 문제를 정부당국자로서 책임지고 다루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요컨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것이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라 했을 때 그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아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EEZ의 기점으로 당신들이 인정하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가 받아낼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일본에서 망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규탄은 할 수 있지만 그 망언을 못하게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국의 영토라는 의지를 가지고 또 EEZ의 기점이라는 부분을 주장해 나가지만 또 그 주장과는 별개로 어민들을 포함한 어업의 이익은 이익이므로 잠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고 또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 땅이다 이렇게 망언이 나올 때 이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주치고 규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어차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거론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일본사람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독도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떤 액션을 함으로 해서 일본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의 정부가 또 무슨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담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협정과정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해수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륙도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밀점검 용역을 현재 실시 중인데 용역 실시기간이 금년 8월 1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시다마는李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기간에 심한 태풍이나 이런 충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이 용역기간 처음부터 거기에 여러 가지 계측장비를 설치했는지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측장비를 8월11일에 설치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강력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이 용역기간으로 모자라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태풍이 다 지나간 다음

에 계측장비가 설치되어서 겨울에만 측정한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면 태풍이 강하게 몰아칠 내년 그 시점에 다시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方鎬委員 계측장비를 언제 설치 해놓았는지 모르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다음 국정감사 때 계측장비를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이런 점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委員 장관님, 본인이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독도문제에 대해서 짧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답변하십니까? 저는 정부, 국무위원들이 독도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참 못마땅합니다.

일본 모리 총리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하면 이 나라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독도는 한국땅이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데 왜 우리 나라 민간인이 거기 올라가는데 허가를 받고 올라가야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EEZ 기선 독도를 기점으로 그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 싸우는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좀 쉽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독도문제만 나오면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독도가 한국 땅인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야당위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독도문제 나왔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모리 총리, 그 분 국적이 일본 아닙니까, 수상 아닙니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 金大中 대통령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독도는 한국땅이다’ 그러면 되지요. 실효적 지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참 궁색합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 아닌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라는 말입니까? 솔직하게 우리 국력이 약하다 그러면 그것은 변명이라도 됩니다. 우리 안방을 놓고 일본이 자기 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안방을 주장하여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분쟁에서는 힘 강한 데로, 주장 많이 하는 데로 기정사실화 되어 가지고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국무위원께서, 이 나라 대통령께서, 이 나라 정부에서 독도문제 얘기할 때는 사족 달지 말고, 실효적 지배 이야기하지 마시고 독도는 한국땅이다 한마디로 끊으십시오.

그리고 일본하고 분쟁이 있더라도 독도를 기점으로 EEZ 기선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부터 치고박고 싸울 때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맞다 틀리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쪽 눈치만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양보 많이 합니까? 중국에 양보하고, 일본에 양보하고, 미국에 양보하고, 달라이라마도 못 오게 하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논지에서 벗어납니다마는 북한의 외교정책, 전략, 전술 정말 배워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金宗佑 해양경찰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먼저 許泰烈 위원님께서 소형선박의 해난사고를 걱정하시면서 300t 미만 어선에 대한 해상교통문자방송 수신기설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300t 미만 선박은 총 9만여척이나 되며 이 수신기는 대당 설치비용이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설치비용이 1,35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해난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張正彦 위원님께서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 마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경예산은 82년도부터 경찰전력강화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예산의 76%가 방위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98년까지는 방위비 규모제한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산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99년부터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해경예산은 방위비 규모제한을 해제하여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인건비 부족액은 공무원 보수현실화를 위하여 신설된 가계지원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충당하였습니다.

2001년 예산에는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전

액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예산구조도 방위비에서 행정비로 전환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權五乙 위원님께서 해경경비정 건조사업은 국고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계속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비정 건조사업은 완성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정건조는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필요한 예산전액을 일반회계에 편성할 때에는 예산규모 증가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별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 등을 신중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고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계속 예산당국과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鄭長善 위원님께서 선박발생 폐유의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대책과 대형오염사고에 대비한 국가방제능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만순찰, 선박출입검사 및 항공기, 경비함정에 의한 감시등으로 폐유 무단투기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항만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폐유 수거체제를 구축하여 폐유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일부 선박에서는 바다에 불법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단속과 계몽·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폐유 수거율을 보다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방제능력 확보목표를 2004년까지 2만t으로 설정하고 해경에서 1만t, 방제조함 등 민간에서 1만t씩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재정 사정으로 계획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4년까지 계획된 방제장비 확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鄭長善 위원님께서 광역경비체제 구축을 위한 장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EEZ 경비정 광역경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

기장비확충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해서 2004년까지 대형함정 14척, 항공기 6척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형함정 1,500t급 1척을 건조 완성을 해서 출력을 시켰고 현재 1,000t급 이상 함정 4척을 건조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3,000t급, 1,000t급 2척을 예산에 반영했고 구난용 헬기도 2척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장비확충계획을 계획대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추가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鄭長善委員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해수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씨프린스호 사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3차 용역보고서가 거의 완결이 됐는데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LG에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중요한 용역사업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유출사고가 났을 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몇 차례 요청했는데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LG에서 하고 있는 용역보고서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도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여러 분야에서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감 전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소극적으로 거론 안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인지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方鎬委員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연평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산동반도까지 연결되는 그 가운데 해역에 앞으로 EEZ를 그을 때 우리 조업권의 확보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하고 특정해역 옆에 보면 조업자제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남북관계라든지 대중국 관계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묶어두어야 될지, 과거 냉전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업자제구역으로 해놓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더불어서 산동반도 부근의 우리 조업권문제, 그래서 앞으로 EEZ 경계획정을 할 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은 대략 어떤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元結喜委員 불법어로와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만 하더라도 3,277건의 불법어업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고대구리라는 소형기선저인망이 1,408척, 금년도만 하더라도 이것이 더 늘어나서 8월 현재까지 2,618척이나 되고 있는데 소형기선저인망은 1,017척이나 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전부터 고대구리인데 이 고대구리를 해양경찰청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해양수산부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벌써 수십 년이나 된 것인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許泰烈委員 해경청장, 300t 미만 소형영세선박이 아까 교통방송,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착안도 안했습니까?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현재 300t 이상도 자비로 전부 설치를 하고 있고요.

○許泰烈委員 그것은 강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사고는 소형선박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사실이 그렇습니다.

○許泰烈委員 65%가 소형선박에서 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착안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許泰烈委員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떠난 마당에 하면 언제…….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許泰烈委員 다른 지금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구하는 판인데 해난사고의 65%가 300t 미만 소형선박에서 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착안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벌써 다 떠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해경청에서는 계속 좀 붙들고 정책발전을 시켜주십시오.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을 정부에서 보고한 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견을 정부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통과에 즈음해서 盧武鉉 장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회계연도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견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부는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적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盧武鉉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모레 19일 해양경찰청 감사 전에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를 방문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40분까지 해양경찰청에 도착하시면 버스를 이용해서 위원님들 모두 함께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

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出席委員(20人)

姜賢旭	權五乙	金淇春	金泳鎭
金龍學	文錫鎬	朴容琬	朴在旭
朴燾太	孫泰仁	元喆喜	李方鎬
張誠源	張正彦	鄭長善	鄭哲基
朱鎭盱	崔善榮	咸錫宰	許泰烈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金基英
전문위원	張仁植
입법심의회관	李元鐸

○政府側參席者

해양수산부

장관	盧武鉉
차관	洪承湧
차관보	金成洙
기획관리실장	金鍾兌
해양정책국장	李龍雨
해운물류국장	程伊基
항만국장	金英南
수산정책국장	安國全
어업자원국장	朴宰永
국제협력관	金炯男
안전관리관	徐廷皓
공보관	崔壯賢
감사관	金奎奎

중앙해양안전심판원	李東源
-----------	-----

국립수산진흥원장	李章旭
----------	-----

해양경찰청

청장	金宗佑
차장	李炅祐
경무국장	李尙奎
경비구난국장	林世鎬
정보수사국장	崔廣賢
오염관리국장	安兌煥